

ISSUE

2018 07호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젠더적 관점의 해석과
국내 이행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ISSUE

2018 07호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젠더적 관점의 해석과 국내 이행 방안*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젠더적 관점의 해석과 국내 이행 방안

제1호 :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내용과 동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호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제3호 : 기후변화 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 뉴욕주
Reform the Energy Vision(REV)
개혁을 중심으로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호 :물관리기본법 통과 이후의 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 연구
(홍영식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 행정관리센터장)

제5호 : Role of Waste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il Bhatta Carbon& Clean Energy Solutions (CCES))

제6호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빈곤과 불평등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7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젠더적 관점의 해석과 국내 이행 방안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젠더적 관점의 해석과 국내 이행 방안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조혜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김정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CONTENTS

I. 서론 01

II.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03

III.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및 세부 지표 해설

1.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08
2.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10
3.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FGM/C)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12
4.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15
5.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17
6.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 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 적 접근 보장 22
7.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 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26
8.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29
9.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30

IV. 연구요약및분야별정책제언

1. 분야별 정책 제언 34
2. 향후 연구 과제 36

참고 문헌 39



I. 서론



I. 서론

- ▶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함. SDGs는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며, 17개의 목표(goals),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indicators)로 구성됨.
- ▶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는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도 성평등 독자목표(Goal 5)로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됨.
- ▶ 특히 SDG 5번에서는 양성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transformative)시키고자 하는 이슈들이 대거 포함됨. 이러한 이슈들은 1975년 이후 제 1차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1995년 북경행동강령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40여 년간의 세계 여성인권 운동의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 따라서 SDG 5번이 탄생한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동 목표의 온전한 달성은 어려우며, 5번의 세부목표와 지표의 수립과 관련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실정임.
- ▶ 현재 SDGs 내 성평등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글로벌 연구는 UN 차원에서 다수 생산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관련 연구가 미흡함(김은경 외, 2014). 특히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의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미비하며, 이는 성평등 관련 목표에 대한 실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 SDGs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그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구하고 있는 바, 국내적으로도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특히 SDGs의 국내외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히 이해한 후 향후 국내이행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함.¹⁾
- ▶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이슈페이퍼는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세부목표, 지표에 대한 수립 배경과 젠더적 의의와 해석을 제시하여 해당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성인지적 이해를 돕고, 관련 국내 가용통계를 파악하여 국내 현황을 제시함. 아울러 5번 성평등 독자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제언함.

1) 현재 2018년 말까지 환경부 주도로 국가지속가능개발목표(K-SDGs)를 수립할 예정임.



II.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II.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 ▶ MDGs내 성평등 관련 목표에서는 모성보건, 교육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Post-2015 논의²⁾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달성을 위한 구조적 방해물을 해결하는 전환적(transformative) 접근을 도입할 것을 촉구함(UN Women 2013:2).
- ▶ 또한 Post 2015의 논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전환적 접근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양성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반할 것을 요청함(UN Women, 2013: 2). 여기에는 국제인권협약인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1979),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이하 ICPD, 1994),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와 여기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리우 20 회의(1994), MDGs, 그리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에서 논의되고 이행되는 이슈들이 포함됨.
- ▶ 이러한 노력으로 SDGs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대거 진입하게 됨. 예를 들면, 여성성기절제 등 여성에 대한 악습, 성평등을 위한 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역량강화, 재생산 건강과 자기결정권,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세부목표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철폐와 인권적 접근이 도입됨.
- ▶ 또한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 이외에도 기타 10개 목표에 성평등 이슈가 포함됨으로써, SDGs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주류화를 실현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공식 명칭이 수립되기 이전,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목표를 지칭하던 총칭적 단어.



III.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및 세부 지표 해설



III.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및 세부 지표 해설

〈표 1〉 SDG 5번 성평등 독자목표 상 지표의 국내 가용통계 현황

세부목표	지표	가용통계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한국여성정의전화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인구센서스> 혼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검점 종합실태조사>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지표(안)** 보건복지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상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태조사> 상 외모에 대한 남녀태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상 점심/저녁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거름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자료> - 추가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태조사>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

세부목표	지표	가용통계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5.5.2. 여성 관리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5.6.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a.1.(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농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에 성별구분적용 예정 • <개인별 주택소유현황>
	5.a.2.(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23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양성평등 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관련 조항 포함*

*통계치가 아닌 관련 법령 혹은 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기술함.

**주: 후술되겠지만, 본 지표의 주 내용인 여성성기절제(FGM/C)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세부목표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바, 이 표에서는 몇 개 대안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1.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평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함.
- ▶ 이 협약은 공적 및 사적영역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함. 앞서 설명하였던 것처럼, SDGs의 세부목표들이 그동안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논의에 의거한 산물임을 상기할 때, 세부목표 5.1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데, 법 자체가 차별적일 수도 있으며, 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 또한 법적으로 차별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더라도, 같은 법은 여성과 남성에게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UN Women, 2015a: 14).
- ▶ 본 세부목표는 5번 성평등 독자목표 내 다른 세부목표들을 아우르는 원칙과 철학을 제시하고 있으며,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적 체계 존재 여부를 제시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가) 지표의 의미

- ▶ 지표 5.1.1.은 1)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반차별(non-discrimination)을 증진할 국내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2) 해당 법의 실행을 '강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를 측정함(UNSD, 2016a: 2). 동 지표에서 고려될 수 있는 국내법은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여성의 노동 제한(work prohibitions), 육아 휴직(family leave), 상속/재산, 국적, 결혼 및 이혼,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할당제, 연금 및 법적 역량(legal capacity) 등을 포함하는 법령임(UNSD, 2016a: 2).
- ▶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라는 세부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양성평등 관련 법 존재의 여부(유무)를 설정한 이유는, 차별적인 법을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임(UNSD, 2016a: 2).

- ▶ 5.1.1 지표가 법의 유무를 측정한다면, 5번 성평등 독자목표 내 다른 지표들과, 기타 세부목표 하의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결과(outcome)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세부목표인 5.2에서는 폭력피해자율 등의 실제 “결과(results)”를 측정함. 따라서 5.1에서는 다양한 양성평등 관련법의 존재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목표 5 내의 다른 지표들과 성평등이 크로스커팅된 다른 목표들에서는 그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5.1과 나머지 성평등 관련 지표들은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UNSD, 2016a: 3).
- ▶ 그러나 지표 5.1.1이 양성평등 관련법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본 지표의 한계로 지적됨. 현재 다수의 국가의 헌법과 가족법, 이혼관련 법, 형법, 국적법, 상속관련 법, 토지소유법 등에서는 여성에게 차별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UNSD, 2016a: 4).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국내 현황을 보면 「헌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법적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고,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음.

〈표 2〉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

분류	법명
여성(양성평등)정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2014.5.28. 전부개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6. 5. 제정)
가족정책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2. 8. 제정) • 건강가정기본법(2004.2. 9. 제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1989. 4. 1. 제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3.24. 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3. 21. 제정) • 아이돌봄지원법(2012. 2. 1. 제정)
권익증진정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 제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2. 3. 제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1997.12.31. 제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6.11. 제정)

출처: 여성가족부 법령현황, http://www.mogef.go.kr/io/ind/io_ind_f029.do (접속일: 2017. 9.15)

2.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세부목표 5.2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철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UN Women, 2015a: 14; 이선주 외, 2010: iv), 일생에 한 번 이상 신체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이 전 세계적으로 35%에 달하고(WHO, 2013: 2), 전 세계 여아 10명 중 1명 꼴로 인생에 한번 이상의 강요된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UNICEF, 2014: 167).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 침해이자, 여성의 잠재력 개발에 장애가 되는 심각한 차별행위로 정의내리고 있음(김은경 외, 2014: 205).
- ▶ 이러한 점에서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문제는 일찍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데, 북경행동강령과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협약(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CPD Programme of Action) 등 여성과 관련된 주요 국제회의 및 문서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여성 관련 구조적 문제임.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MDGs에서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반면, SDGs에서는 5번 성평등 독자목표의 세부목표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음.

나. 지표 분석

1) 지표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세부목표 5.2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로 5.2.1은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성적 파트너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율이 설정되었음. 이 지표 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는 법적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데이트 상대 등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육체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형태의 폭력 역시 폭력의 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음. 또한, 성인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에 대한 폭력 역시 함께 집계되어 모니터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국내에는 지표 5.2.1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통계는 부재하나 <가정폭력 실태 조사>와 <데이트 폭력피해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대략적 비율을 유추해볼 수 있음. 그러나 두 자료 모두 조사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녀가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계자료의 개발이 요구됨.
- ▶ 우선,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만 19세 이상의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의 신뢰성을 갖고 있으나, 15세~19세 사이의 소녀와 동거상태가 아닌 비동거 상태의 성적 파트너에게 당한 폭력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님. 201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배우자 여성이 1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폭력의 피해율은 12.1%이고, 이 중 신체적 폭력은 3.3%, 정서적 폭력은 10.5%, 경제적 폭력은 2.4%, 성적폭력은 2.3%로 나타남(이인선 외, 2016: 50).
- ▶ 한편,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2016년에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데이트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전체설문 답변자 1,082명 중 여성 1,017명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통제/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손문숙·조재연, 2016: 10).

2) 지표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세부목표 5.2를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지표로 지표 5.2.2는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율이 설정되었음. 지표 5.2.1이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인 성적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을 측정한다면, 5.2.2는 가해자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소녀의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도 폭력의 장소를 확장하고 있음. 한편, 앞선 지표 5.2.1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언급함으로써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역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지표 5.2.2에 관한 국내 가용 통계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두 자료 모두 폭력의 범주를 육체적, 혹은 성적 폭력에만 한정하고 있고,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다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통계 구축이 필요함.
- ▶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서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성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다 포괄적 범위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님. 동 조사의 2016년도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전체 응답자 중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0.8%인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경우, 1.5%가 신체적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성 응답자의 경우, 음란메세지 4.0%, 몰래카메라 0.1%, 성기노출 피해 1.6%, 성희롱 0.9%의 경험율이 보고된 바 있음.
- ▶ 한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성범죄 피해자를 성별, 연령별로 분리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성인여성과 15세 이상 소녀의 연령별 성범죄 피해현황 파악에 유용하나, 정신적 폭력에 대한 조사는 부재해 포괄적인 의미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아우르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3.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FGM/C)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세부목표 5.3은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FGM/C)와 같은 성차별적 구조적 문제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전의 MDGs에 비해 SDGs가 진일보한 면 중 하나로 평가(Esplen, 2015: 15)되고 있는 세부목표임.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은 성차별적인 사회적 가치와 신념에 기반해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관습으로 정의되며, 동 세부목표에서 예시로서 제시된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OHCHR, n.d.; UN, n.d.b; Ras-Work, 2006),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내릴 필요가 있음.
- ▶ 본 세부목표에서 다루고 있는 조혼, 강제결혼, 그리고 여성성기절제 등은 특히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들임(장은하 외, 2016). 개발도상국 소녀들은 이른 결혼으로 인해 빈곤과 학대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HIV/AIDS 감염과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함(UN, n.d.a: 2; 장은하 외, 2016: 41). 또한, FGM 역시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소녀들을 심각한 보건문제에 노출시키게 되는데, FGM으로 인해 심각한 통증과 출혈, 감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UNICEF, 2013: 43), 더 나아가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함(장은하 외, 2016: 43).

- ▶ 이러한 인식 하에 유엔(UN)에서도 이같은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이 여성 및 소녀의 재생산 건강 및 성·재생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들에게 주어진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OHCHR, n.d.; UN, n.d.b; Ras-Work, 2006).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엔(UN) 차원의 여러 문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유엔여성인권차별철폐협약(CEDAW),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ICPD Programme of Action), 북경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 of the Fourth Conference on Women in Beijing)에서도 이미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도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언급되고 있음(OHCHR, n.d.).

나. 지표 분석

1) 지표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세부목표 5.3.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지표로 5.3.1은 유해한 관습 중에서 아동결혼 및 조혼과 관련된 지표로서 20-24세의 여성인구 중에서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각각 조혼 혹은 동거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수립되어 있음(UNSD, 2016a: 16). 성년이 되기 전의 아동결혼 및 조혼³⁾은 사회문화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젠더역할(gender roles)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UNSD, 2016a: 1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결혼 및 혼인 등록 관련 동의·최소 연령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Marriage, Minimum Age for Marriage and Registration of Marriage) 등에서 아동결혼의 인권 침해적 성격을 문제시 하고 있음.
- ▶ 또한, 앞서 세부목표의 의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 지표에서 다루고 있는 성년이 되기 이전의 아동결혼 및 조혼은 개도국 소녀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개도국 소녀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학교 교육이 어려워지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참은 일자리(decent work)를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소외될 수 있음.

3) 아동결혼(child marriage)과 조혼(early marriage)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큰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음. 우선, 아동결혼(child marriage)은 아동인권협약(CRC)상의 아동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법적 성인연령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18세 이하 아동과의 결혼을 의미함. 한편, 조혼(early marriage)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아동결혼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보통 18세 미만의 연령에 이루어지는 결혼을 의미함(SRI, 2013).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국내에는 지표 5.3.1의 정의에 부합하는 가용통계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우선, 연령별로 작성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혼인통계가 존재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기는 함. 그러나 18세 이전의 동거 경험 혹은 사실혼 경험에 대한 통계는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133).
- ▶ 동 지표에 대한 국내 현황파악을 위해 최근 3년(2015~2017)의 <인구동향조사> 상의 연도별 혼인건수를 아내와 남편의 연령으로 나누어 보면, 15세 미만의 남녀 혼인 건수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3개년 총 남성 0건, 여성 6건), 19세 이하 남녀 혼인 건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여성의 경우, 약 1.1%, 남성의 경우, 0.3% 수준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⁴⁾

2) 지표 5.3.2.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지표 5.3.2는 15~49세 사이 여성인구 중에서 세부목표 5.3에서 제시된 유해한 관습의 사례 중 하나인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M/C)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로 설정되어 있음(UNSD, 2016a: 17). 여성성기절제(FGM)는 의료적 필요성이 아니라 여성의 처녀성 및 정절(chastity)과 관련된 성차별적 믿음과 전통관습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유해한 관습으로서 여성 및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임(UN, n.d.b).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등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언급된 바 있고,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에서도 여성성기절제를 고문의 한 형태로 정하고 있음(UN, n.d.b: 17-18).
- ▶ 앞서 세부목표의 의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본 지표의 내용인 FGM/C은 인권침해적 요소는 물론이고, 개도국 소녀들의 건강과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함. FGM/C은 개도국 소녀들의 재생산건강에 치명적이며, 여아들이 통증과 출혈, 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임.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본 지표 상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여성성기절제가 주로 종교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표 수립이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33), 동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와 국내적 상황 및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 수립에 대한 고민과 국내적 논의가 필요함.

4)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 통계

- ▶ 앞서 본 지표의 의의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세부목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해한 관습이 사회문화적 차별과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한국 여성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왜곡현상, 미디어 상의 다이어트, 외모 등에 대한 신체왜곡 현상 등 역시 소비자본주의라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고려될 필요가 있음.⁵⁾ 이와 관련된 국내 가용통계의 예로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상 청소년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상 외모에 대한 남녀태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 상 점심/저녁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거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4.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세부목표 5.4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적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통적인 성별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무보수로 돌봄 및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Ferrant et al., 2014; Swiebel, 1999: 1-2; UN Women, 2015b; UNSD, 2016a: 22). 이러한 여성들의 무보수 돌봄 및 가사노동의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간 참여율과 임금수준의 격차, 남녀가 종사하는 직종이 차이를 보이는 성별분업 및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Ferrant et al., 2014; Swiebel, 1999:2-3; Antonopoulos, 2009:11-19; UN, 2016: 9).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국제사회에서는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여성회의에서 가사와 경제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되는 '여성의 이중부담(women's double burden)' 문제가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무보수 노동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5)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의견(2017. 12. 8.)을 반영하여 작성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세부목표 5.4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성별, 연령, 장소에 따라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이 설정되었음.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최종소비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무보수 노동과, 공동체·환경·가족 및 가까운 친척 외의 타인을 위해 무보수로 수행하는 봉사활동까지 포함하여 정의되고 있음. 동 지표는 개인의 전체 시간 중에서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로 계산되며, 성별, 연령, 지역(도시/지방)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혼인상태, 소득, 장애여부, 인종/민족 등의 분류에 따라 분리된 통계가 권장되고 있음(UNSD, 2016a: 20).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국내에는 지표 5.4.1의 정의에 부합하는 통계가 비교적 잘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개인의 시간사용과 관련된 자료가 다양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과 관련된 행동별로 나뉘어 조사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소득별, 교육수준별 등 다양한 집단별로 또한 세분화되어 있음. 본 지표와 관련된 국내가용 통계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자료>가 대표적이며(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134), <생활시간조사>에서는 10세 이상 인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혼인상태별, 소득별, 농가/비농가 등으로 세분화된 행동별 평균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여성가족패널자료>에서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혼인 경험 여성의 가사노동 정도, 남편의 가사노동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이 조사되어 있음.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에서도 성역할 태도, 자녀돌봄 부담정도, 가사노동 수행비율, 부부 간 가사노동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 이러한 국내 가용통계 중에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면, 남녀 간 성별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시간사용의 패턴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가장 최근인 2014년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일 평균적으로 여성이 일에는 2시간 26분,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는 각각 2시간 29분, 36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남성은 일에는 4시간 6분,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는 각각 32분, 10분의 시간을 평균적으로 할애하고 있었음.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에 약 3~5배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미함.⁶⁾

6)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추출

- ▶ 지역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역시 흥미로운데, 우선, 도시보다 농촌에서 일과 가사, 돌봄노동 각각 사용하는 남녀 간 시간의 차이가 더 작게 나타남.연령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시기에는 남녀 간 시간 사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노동인구가 되는 20대 시기부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 더 많고,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며, 60대 이상의 은퇴시기가 되면, 가사노동 시간의 격차는 여전히나, 돌봄노동 시간은 비교적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임.⁷⁾

5.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정치·경제·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권은 성평등 문제와 여성들의 권한강화(empowerment)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여성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UNSD, 2016: 30).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성평등 달성 및 여성들의 권한강화에 대한 발전을 측정하는데 핵심 지표가 됨(UNSD, 2016: 29).
- ▶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은 1995년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12개 주요 관심분야 중 하나로 권력구조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를 선정함(UN, 1995: 92).
- ▶ SDGs 수립을 위한 UN의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은 SDGs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거듭 강조하며, 8차 회의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성평등 달성을 위한 우선 사항으로 선정함. 이에 따라 SDGs 내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세부목표 5.5로 포함함.
- ▶ 동 세부목표는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지표 5.5.2. '여성관리직 비율'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검토함.

7)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추출. 본 내용 및 구체적 통계수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 pp. 75~76의 표를 참고하기 바람.

나. 지표 분석

1) 지표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지표 5.5.1은 의회(national parliaments)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함. 의회의 경우 단원제 의회의 의원과 양원제 의회의 하원의원을 포함하며 양원제 의회의 상원의원은 해당되지 않음.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여성들을 말하며 지방정부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방정부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UNSD, 2016: 24).
- ▶ 동 지표는 의회와 지방정부에 대하여 각기 다른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음. 의회의 경우 전체 여성과 남성의 의석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단원제 의회 또는 양원제 하원 의원석의 비율(%)로 계산되며, 지방정부의 경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체 여성과 남성의 수 중에서 여성이 대표직을 맡은 수의 비율(%)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경우 각 국가의 지방정부의 구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UNSD, 2016: 26).
- ▶ 지난 30여 년간 여성의 정치참여도에 대한 표준 측정은 의회에서의 여성 의원의 비율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원수, 장관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여성 정치참여를 포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자료는 여전히 정치참여의 모든 수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표 5.5.1.에서 지방정부에서 여성의 참여를 측정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게 됨(UNSD, 2016: 26).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지표 5.5.1의 경우 국내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 당선인 통계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대 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어 지표 5.5.1.에 대한 국내 지표 산출이 가능함. 지방정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통계를 살펴볼 수 있음.
- ▶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모두 포함)은 2000년 2.2%인데 반해, 2016년에는 17%까지 증가함.

〈표 3〉 국내 의회(국회의원) 여성 의석 비율

(단위:%)

연도	2000	2004	2008	2012	2016
국회의원	2.2%	13.0%	13.7%	15.7%	17.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 ▶ 지방정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음. 다음 표는 역대선거별 여성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비례대표 당선인 비율을 정리한 것임.
- ▶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여성 의석비율은 2002년부터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광역의원의 경우, 2002년 2.3%였던 여성의원 비율이 2018년에는 13.3%로 증가함.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2002년 67.7%였던 데 반해, 2018년에는 71.26%로 소폭 증가함.
- ▶ 기초의원의 경우, 2002년 2.21%였던 여성의원의 비율이 2018년에는 20.7%로 크게 증가함. 그러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비례대표 여성의석 비율은 높은 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임.

〈표 4〉 국내 지방정부(광역의회, 기초의회의원)의 여성 의석 비율

(단위:%)

연도	2002	2006	2010	2014	2018
광역의원	2.3	4.89	8.09	8.23	13.3
광역의원 비례대표	67.12	73.08	71.6	65.48	71.26
기초의원	2.21	4.38	10.91	14.65	20.7
기초의원 비례대표	-	87.2	93.62	95.78	97.14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를 참고해 표로 재구성함.

2) 지표 5.5.2. 여성 관리직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지표 5.5.2는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외 분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음. 지표 5.5.2는 MDGs에서 사용되었던 여성의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의 표준 척도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포함된 지표임(UNSD, 2016: 30).
- ▶ 그러나 ‘여성 관리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행정부 여성 관리직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고위직(leadership positio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지표는 아래와 같음.
 - **행정부**: - 전체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 중 여성의 비율
- 전체 장관직 중 여성 장관직의 비율
- 전체 지방정부 요직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율

- **입법부**: -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의 비율
- **사법부**: -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의 비율
- 전체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의 비율
- **그 외**: - 공적·사적 부문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관련 국내 가용 통계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매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판사를 포함한 여성 법조인 비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 행정부의 경우,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여성비율은 13.2%로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2.1%)보다 1.1%p 증가한 수준임. 그러나 행정부 부분의 경우 국가원수, 정부 대표 여성의 비율과 여성 장관직 비율에 대한 통계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표 5〉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단위:%)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4급 이상 ¹⁾	3.2 ²⁾	4.5	6.3	7.3	8.2	8.8	9.7	10.6	12.1	13.2	1.1
고위 공무원	-	1.0	2.4	3.2	3.7	3.7	3.4	3.7	4.9	5.2	0.3
3급	2.0	4.1	4.7	4.0	5.0	5.2	5.3	6.3	6.6	6.2	-0.4
4급	3.8	5.2	7.2	8.4	9.4	10.1	11.3	12.4	14.1	15.5	1.4

출처: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년도, 여성가족부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

주: 1)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연구·지도·우정직·전문직·외무·별정·일반임기제 제외

2) 1, 2급 포함

- ▶ 사법부 부분의 경우,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의 비율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경우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전체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 관리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음.
- ▶ 판사, 검사 등의 여성 법조인의 비율은 2017년 기준 26.1%로, 전년의 25.3%보다 소폭 증가함. 여성 판사의 비율만 살펴보았을 경우에는 28.9%로 2016년(27.8%)보다 소폭 증가함.

〈표 6〉 여성 법조인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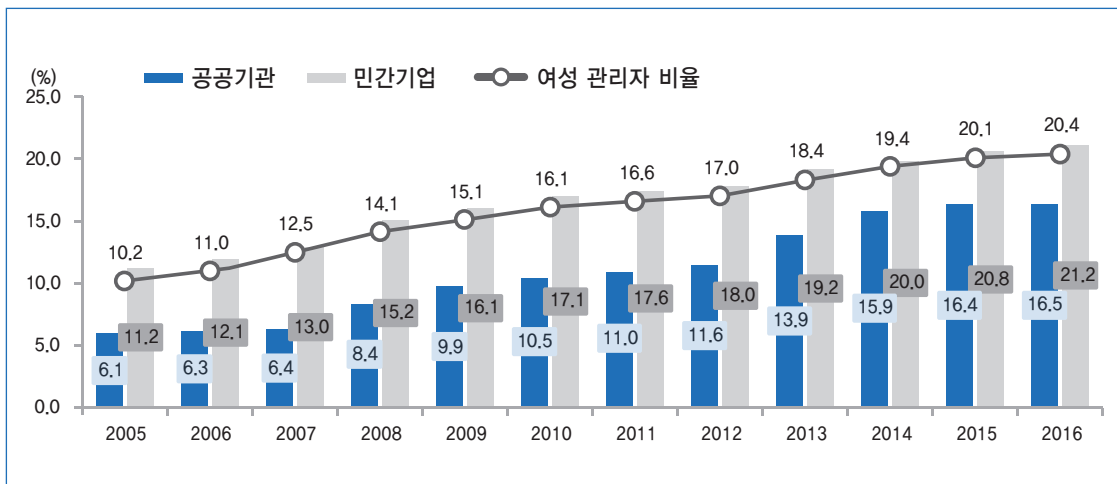
	2005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감
계	6.9	9.7	15.0	16.7	18.7	21.2	22.9	24.1	25.3	26.1	0.8
판사1)	11.3	18.7	24.0	25.5	26.8	27.4	27.4	27.6	27.8	28.9	1.1
검사1)	7.0	11.6	20.8	22.7	24.1	25.4	26.6	27.7	28.7	29.4	0.7
변호사2)	5.6	6.8	11.7	13.6	16.1	19.4	21.7	23.2	24.4	25.3	0.9

출처 :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년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2010,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

주 : 1) 2009년부터 인사혁신처 자료임

2) 개업변호사 기준

- ➡ 그 외, 공적·사적 부문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고용노동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참고할 수 있음.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0년 전인 2006년 11.0%에서 2016년 20.4%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보다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여성 관리자 비율 추이 (단위 : %)

출처: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결과」,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재인용

6.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여아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여성은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피임에 대한 정보나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계 없이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여 높은 모성 사망률을 야기하기도 함(조혜승, 2017). 또한 빈곤한 가정환경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에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를 통해 성매개 질환에 노출되기도 함(장은하 외, 2017). 이와 같이 여성의 성·재생산 이슈는 여성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 ▶ 본 연구에서는 SDGs 원문의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을 성·생식보건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성·재생산 건강'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전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된 모자보건과는 다른 의미로 여성의 생애 주기적 전체의 인권의 개념(rights-based approach)으로 접근함. 즉, 생리, 피임, 임신, 출산, 낙태, 출산 이후 건강관리, 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전체로 포괄하는 건강을 의미함.
- ▶ 세부목표 5.6은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ICPD)과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근거함.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는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이 효과적인 인구개발 전략에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함(Amnesty International, 2012).
- ▶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합의된 국제적 의제인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남녀의 평등한 권력관계를 추구하고자 여성과 빈곤 등의 12개의 주요 관심부문을 설정함(이선주 외, 2010). 이 중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이슈는 여성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항으로 포함됨.
- ▶ 이와 같이 SDGs의 세부목표 5.6은 이 두 아젠다의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생식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정됨. SDGs 수립을 위한 UN 차원의 공개작업반(OWG)은 제 8차 회의부터 양성평등과 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슈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함. 이에 따라 SDGs의 5번 성평등 독자목표 내에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세부목표 5.6이 설정됨.

- ▶ 세부목표 5.6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지표 5.6.1)'과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지표 5.6.2)' 두 가지 지표로 구성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지표 5.6.1은 성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에 남성을 비롯하여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얼마나 고려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 UN Women은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인구통계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와 복수지표집단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의 문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함(UN Women, 2015a: 18).
- ▶ 구체적으로 DHS에 포함되어 있는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임신 등의 의사결정에 대한 아래 3개 문항에 대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비율을 측정함(UNSD, 2016: 31).
 -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 혹은 파트너에게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피임기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 있는지의 여부
 - 여성이 자신을 위해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지표 5.6.1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음. 이 조사는 1964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3년 주기로 측정되며 한국의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 및 출산 형태와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됨(이상식 외, 2015: 3).
- ▶ 구체적으로 1) 성관계, 2) 피임기구 사용, 3)성·재생산 건강에 해당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문항들을 통해 5.6.1의 국내 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표 7〉 5.6.1 지표와 관련된 국내 설문 문항

세부 지표	세부 문항
성관계 결정권	• 없음
피임기구 사용여부 결정권	•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실천율 •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의 피임 목적 • 현재 피임 중인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의 현재 피임 방법
성·재생산 건강에 관한 결정권	• 유배우 여성(15~49세)의 현존자녀의 성구조별 추가출산 계획 •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중단 이유

출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국내 전국적인 표본을 토대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SDG 5.6.1 지표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 ▶ 그러나 현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5.6.1지표의 국내 이행정도를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 첫째, 성관계 결정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셋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미혼여성의 성관계와 피임여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 따라서 SDG 지표 5.6.1에서 제시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토대로 성관계, 피임사용여부, 출산 등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도구에 신규 질문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지표 5.6.2. 분석: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가) 지표의 의미

- ▶ 5.6.2. 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 정보, 교육을 법률 및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임. 이는 성관계 및 재생산을 포함한 여성의 보건 문제가 개인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됨을 의미함(이선주 외, 2010: 90).
- ▶ UN Women은 15~49세 여성의 성관계와 재생산 관련 건강, 정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을 아래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제안함(UN Women, 2015a: 18).
 - 배우자, 보호자, 부모 혹은 그 외 인물을 포함한 제 3자의 권한 없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 연령 및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가능성 여부
- ▶ 이 지표는 앞으로 개발될 설문조사에 대한 각 정부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측정될 것임(UN Women, 2015).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음.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지표 5.6.2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8〉 5.6.2 지표와 관련된 국내 법률 및 규정

법률 및 규정	세부 조항
헌법	제 36조 제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제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자보건법	제 1조: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 1항).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 1항).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 1항).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 1항). 제16조(협회):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제 1항).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 4. 재난대비 안전 / 5. 교통안전
학교 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 헌법 제 36조 제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국가가 여성을 포함한 국민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 ▶ 모자보건법을 통해서도 국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제 1조), 다양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함. 또한 제 1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다양한 의료를 지원할 것을 명시함. 이 밖에도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6조(협회) 등의 조항을 통해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법률로 제정함.
- ▶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학교보건법을 통해 보장됨. 아동복지법 제 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학교보건법은 취학연령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 9조)을 명시하며,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보장함.
- ▶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관련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
- ▶ 그러나 성·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 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7.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와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함. 그 이유는 토지 및 금융자산 등 경제자원이 개인과 가구의 수입 창출원이 되며 경제적 충격과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자원은 은행거래를 포함한 신용거래에 있어서 담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UN Women, 2015a: 18).
- ▶ 또한 자산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여성은 가정 내에서 협상력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켜 더 강력한 대비책을 가질 수 있음(UN Women, 2015a: 18).

- ▶ 그러나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토지소유는 남성에게만 한정되거나, 여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도 다수 존재함. 이러한 이유로 동 목표에서는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함.

나. 지표 분석

1) 지표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농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가) 지표의 의미

- ▶ (a)는 전체 농업 종사자 중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함. 반면 (b)는 토지 소유에 있어서 양성 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농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의 정도를 나타냄.
- ▶ 수식 (b)에서 성별 분리 제시를 요구하는 토지권 종류(land tenure)란 토지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 및 방식이며 이는 토지 사용을 보장하는 중요 요소임.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농업센서스(World Census of Agriculture)는 국가마다 특정 유형의 토지권 종류를 사용하도록 권고함(UNSD, 2016a: 38). 토지권의 종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법적 소유권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 형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소유권 포함)
 - 비법률적 소유권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
 - 타인으로부터 대여한 토지
 - 기타 종류의 보유 형태
- ▶ 토지권 보유 형태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UNSD, 2016a: 38):
 - 소유증서(title)를 통한 권리
 - 조건 하의 사용: 상속 보유권(heredity tenure), 영구 또는 장기 임대(perpetual lease & long-term lease), 낮은 임대료 또는 무비용의 임대
 - 부족 및 공동체가 소유한 토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통적으로 유지된 보유방식(UNSD, 2016a: 38).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2016a: 13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현재 헌법 23조에서 모든 국민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제적 자원, 토지, 재산의 소유와 통제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본 세부목표와 지표는 한국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음.
- ▶ 그러나 향후 해당 세부목표와 지표의 취지에 기반하여 국내적 맥락에 적합한 지표의 수립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본 지표를 한국에서 적용할 경우, 단지 농지소유 뿐 아니라 각종 동산 및 부동산 소유에 대한 지표로 그 해석을 확대해 볼 수 있음. 이는 동 지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단지 여성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과 소유가 법적,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임.
- ▶ 따라서 법적으로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과 같이 농업의 비중이 적고, 4차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SDGs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 현재 한국의 경우 토지소유현황에 대해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에 성별구분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음. 또 다른 지표로는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을 고려할 수 있음. 2017년의 경우 남성은 56.4%(751만2천명), 여성은 42.4%(580만 1천명)으로 주택 소유율에 있어 남성이 약 1.29 배 높았으나, 여성소유자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⁸⁾

2) 지표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수

가) 지표의 의미

- ▶ 지표 5.a.2에서 의미하는 법적근거는 여성의 토지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포함함. 본 지표는 토지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자산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내용도 모니터링 함. 보다 구체적으로 동 지표는 여성의 토지권 보장 증진을 위한 여성특화 척도를 채택하여 양성평등 진척도를 모니터링 함(UNSD, 2016a: 40). 지표는 0에서 4까지 점수체계를 사용하는데, 이는 정책/사법체계가 법안 개혁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타냄(UNSD, 2016a: 40-41):
 - 0점: 사법체계에서 관련 지표 찾을 수 없음
 - 1점: 관련 정책 수립 중
 - 1.5점: 관련 정책이 준비되어 있음

8) 통계청. 2016년 기준 주택소유통계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64721 (접속일 2017. 12. 18)

- 2점: 심의를 위해 법률 입안
- 3점: 기본법(primary law) 상 지표 확인 가능
- 4점: 다수의 법률 수단에서 지표 확인 가능
- N/A: 적용 불가능

이올러 동 지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UNSD, 2016a: 41):

- 국가 법률체계가 토지 분배 및 소유권 프로그램에서 여성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주는지 여부
- 여성의 토지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자금을 설립했는지 여부
- 부부의 경우, 사유재산(또는 사용권)에 대한 공동 소유권 등록이 의무인지 여부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본 지표는 법적 근거 여부를 검토하는 지표이므로 통계의 적용은 필요하지 않음.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경우 헌법 23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동 지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원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한국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8.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현재 정보통신기술은 마케팅 및 은행업무 등 다수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는 농촌 및 벽지 거주자의 정보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 지난 10년 동안 휴대폰 통신망은 급속하게 확산했으며 휴대폰 가입 수는 전 세계 인구수와 거의 같음. 하지만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 특히, 휴대폰 보유는 만약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유'한다면,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며, 이는 사적 영역 뿐 아니라 직업적 목적에서도 마찬가지임. 많은 연구들은 여성이 휴대폰을 보유함으로써 역량이 강화되었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함(UNSD, 2016a: 43).
- ▶ 그러나 많은 국가들에서 정보통신기술 접근·보유·사용·이익에 대해 남성과 여성 비율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며, 본 지표는 이러한 성별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추적하는 데 중요함(UNSD, 2016a: 44).

나. 지표 분석

1) 지표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가) 지표의 의미

- ▶ 본 지표는 '성별 휴대폰 보유율'로 정의되며, 개인용도를 위해 최소 1개의 활성화된 SIM 카드와 휴대폰 단말기가 있다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함.⁹⁾ 이외에도 사적인 용도(사적 전화통화, 인터넷 접속 등)로도 사용 가능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휴대폰 또한 포함됨. 그러나 활성화된 SIM 카드¹⁰⁾만 가지고 있고 휴대폰 단말기가 없는 개인은 제외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보유자로 포함되어 계산됨(UNSD, 2016a: 43).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현재 휴대전화 보급률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이 지표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매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환경과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을 참고할 수 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6년 현재 성별 스마트폰 보유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87.9%, 여성은 82.2%로 남성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이용률의 경우, 2016년 남성이 86.7%, 여성이 80.6%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 ▶ 즉, 스마트폰의 보유와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검색 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됨.

9.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가. 세부목표의 의의

- ▶ 이 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안된 지표는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출의 비율임. 동

9) 휴대폰 단말기란 공중교환전화망(PSTN) 접속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이동무선 공중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휴대전화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IMT-2000 (3G) 및 IMT-Advance와 같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 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선불 및 후불 휴대폰 모두 포함된다.

10) 활성화된 SIM 카드는 지난 3개월 이상 사용한 SIM 카드를 의미한다

지표는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정책 결과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UN Women, 2015a: 19).

나. 지표 분석

1) 지표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가) 지표의 의미

- ▶ 본 지표는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cycle)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예산 배분 및 지출을 1) 추적하고 2) 공개하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함. 예산배분 및 지출 추적시스템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예산 담당 부처 주도하에 관련 부문 부처 및 국가여성기구(National Women's Machinery)와 협력하고 의회 또는 감사원과 같은 적절한 기관에서 감독해야 함(UNSD, 2016a: 45).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음이 인정되려면 각국은 다음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함:

① 양성평등을 통합시킨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의 존재¹¹⁾

- i. 성인지적 예산 배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회람(call-circulars)이나 지시 등의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 ii. 부문별 예산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할당 여부
- iii. 성인지예산서 여부
- iv. 예산 배분에 대한 사전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부
- v. 예산 배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수행 여부

② 양성평등에 대한 배분 및 지출이 정부 웹사이트·공식 게시판·공고문을 포함한 공식 정부 간행물 및 경로를 통해 적시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될 경우 공적 자금 지출로 간주함. 본 지표의 목적을 위해,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에 대한 배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UNSD, 2016a: 46).

- ③ 여성 및 여아를 특정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원
- ④ 여성 및 남성 모두가 대상이지만 양성평등이 주요 목적인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원. 예를 들어 여성 및 남성고용 촉진, 남녀 평등한 관리직 대표성 및 남녀 동등임금
- ⑤ 양성평등이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배분된 자원. 예를 들어 양성평등은 주요 목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여성 및 여아가 남성 및 남아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등을 포함.

11) 5가지 기준의 기준 기간은 현 회계연도임.

나) 가용 국내통계 및 현황

- ▶ 본 지표는 통계의 수치가 아닌 시스템의 존재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음. 한국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이 존재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내에 다양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음.¹²⁾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 웹페이지 참조

<http://www.kwdi.re.kr/page.kw?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188> (접속일 2017. 12. 18)



IV. 연구요약 및 분야별 정책 제언



IV. 연구요약 및 분야별 정책 제언

- ▶ 동 연구는 SDGs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한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 연구결과, 한국은 SDGs 성평등 지표와 대응하는 통계지표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일부 성평등 관련 지표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 ▶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성기절제(FGM/C) 등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SDGs의 적극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맥락을 반영한 대안 목표 및 지표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 아울러 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 이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적합한 가용통계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 통계 생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함.
- ▶ 또한 관련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업과 거버넌스의 확충이 필요함이 드러남.
- ▶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국내 SDGs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해 분야 별로 다음을 제언함.

1. 분야별 정책 제언

가. SDGs 성평등 목표 달성 거버넌스

1) 성평등 목표 이행 기구

- ▶ SDGs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SDGs의 방대한 주제와 부처 간 협치를 조율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현재 SDGs의 국내이행은 2000년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되었다가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맡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 산하의 개별 위원회로서는 SDGs의 다양한 의제를 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9;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4-5)¹³⁾.
- ▶ 2018년 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운영에 착수하였으며, 이해관계자 논의, 대국민 참여, 관계부처 협의 등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 2018년 말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목표를 확정할 예정임.

13) 이 부분은 본 연구를 진행하며 개최된 자문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됨.

- ▶ 또한 환경, 교육, 보건, 성평등, 도시, 물 등 SDGs 내 특정 목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자문, 조정, 협치를 담당할 주무부처가 필요하며 성평등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2)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의 제도화

- ▶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법·정책에 주류화(통합)하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 중 보다 실현가능한 방안은 기존의 법·정책에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통합하는 방법임. 이는 이미 이행 중인 메커니즘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나 노력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과 이행을 위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양성평등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여성가족부가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주무부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임.¹⁴⁾
- ▶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평등위원회에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부과할 수 있음. 특히 다부처 간의 협치가 필요한 크로스커팅 이슈를 고려할 때,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3)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역할

- ▶ SDGs는 글로벌 목표 수립 프로세스부터 참여적으로 진행되었으며, SDGs의 기본정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단체, 통계관련 기관 등 각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 **정부:** 정부는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전반 프로세스를 주도하여야 하며, 현재 환경부에서 K-SDG 수립을 주도하고 있음. 성평등 이슈는 특히 다른 여러 목표에 주류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이행은 위해서는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자문 하에 진행되어야 함. 각 세부목표의 달성을 위한 주무부처 지정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정부 내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과 SDGs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며, 이로 인해 부처 간 협조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SDGs 및 SDGs 내 성평등 목표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이 필요함.
- ▶ **연구기관 및 학계:** 국내 젠더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한 글로벌 논의의 추적과 분석을 담당할 수 있음. 아울러 SDGs와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 대학교에서의 SDGs 관련 강의 개설 등을 통해 SDGs 성평등 목표에 관한 지식을 확산하고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
- ▶ **시민사회:** 국내외 구체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SDGs 성평등 및 크로스 커팅 목표를 사업에 반영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SDGs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모니터링작업에 참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국내에 SDGs 성평등 목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이행 평가에도 기여할 수 있음.

14) 2017. 12. 05.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자문회의

- ▶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단체:** 1995년부터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 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지자체와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음. 이러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업 활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며, 아래로부터 위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등 SDGs에서 천명한 기본원칙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10). 이들은 지역차원에서 구축된 데이터나 통계를 발굴하여 지표 수립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의 이행 모니터링을 작업을 담당할 수 있음.
- ▶ **통계관련 기관:** 우리나라에서 SDGs지표의 통계관리는 통계청과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에서 합동으로 담당하고 있음. SDGs 내 5년 성평등 독자목표와 크로스커팅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성평등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성인지통계 생산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심층적으로 필요한 성인지 통계의 분석 연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4) SDGs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 ▶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의 로드맵 구축을 제안함. 2015-2020년의 첫 5년은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20-2025의 다음 5년은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강화, 2025-2030의 마지막 5년은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단계에서의 단순한 제안임. 또한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갱신하여 향후 5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 첫째, 글로벌 논의 현황과 해외 사례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음. 예를 들면 SDG 2번 목표의 세부목표 내 여성과 소녀의 빈혈수가 지표로 포함되기로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임산부의 재생산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목표 달성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임.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내 이행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함.
- ▶ 둘째, 국내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함. 여기에는 5년 성평등 독자목표와 크로스커팅된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해석, 지표 확정, 대안지표 개발 작업들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2018년 말까지 수립될 예정인 국가성평등목표(K-SDGs)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정책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 셋째,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SDGs 성평등 목표의 국외 이행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정부의 ODA 사업 내에서의 성주류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연구가 근본적으로 필요함. 한국에서는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ODA를 시행하고 있으나, 성인지적 ODA의 비중도 전체 ODA의 약

10% 정도로 낮고, KOICA를 제외하고는 성인지적 ODA 수행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발되고 보급된 성인지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부처의 ODA 담당관들의 성인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 ▶ 넷째, 통계와 관련 하여 5번 성평등 독자목표, 크로스커팅 목표 이외에도 SDGs의 전 지표의 성인지적인 해석과, 성별 분리 가능 통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기존 성평등 관련 국제기구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소개·비교하는 작업, 글로벌 지표 중 국가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대해 국별 비교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작업 등도 수행된다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풍성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고 문헌



참고문헌

- 김은경, 장은하, 이미정, 김영택, 곽서희, 조영숙 (2014).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 이인선, 장미혜, 황정임, 이미정, 주재선, 정수연, 조윤주 (2016).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이삼식, 박종서, 이소영, 오미애, 최효진,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선주, 변화순, 박성정 (2010).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은하·김정수·천숙연(2016),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은하·김은경·조혜승·김정수·김신아·김다현·박윤정·이지현·최소담·안수린·김경량·장지순(2017).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VII):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지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혜승(2017). **국제리뷰-네팔의 소녀 현황 및 수요분석. 젠더리뷰**.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청·여성가족부(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I. 해설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16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II. 글로벌 지표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 7. 1.). URL: <http://www.odawatch.net/470563>
-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isis.kisa.or.kr/board/?pagelid=060100&bbsId=7&itemId=817&searchKey=&searchTxt=&pageIndex=1>

- Amnesty International (2012).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 Human Rights Framework*.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 Antonopoulos, R. (2009). *The unpaid care work – paid work connection* (Working Paper No. 86).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Esplen, E. (2015). *Progress for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303), 14.
- Ferrant, G. Pesando, LM., & Nowacka, Keiko (2014). *Unpaid Care Work: The missing link in the analysis of gender gaps in labour outcomes*. OECD Development Centre. https://www.oecd.org/dev/development-gender/Unpaid_care_work.pdf (접속일: 2017.10.19.)
- OHCHR (n.d.). *Information Seri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Harmful Practices, Especially Forced Marriage and Female Genital Mutiliation*.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Women/WRGS/SexualHealth/INFO_Harm_Pract_WEB.pdf (접속일: 2017. 10. 05.)
- Ras-Work, B. (2006). *The Impact of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on the Girl Child*. UN Expert Group Meeting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Girl Child (EGM,DVGC/2006/EP.4).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 UNICEF.
- SRI (2013). *Analysis of the Language of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s*. Sexual Rights Initiative. Sexual Rights Initiative (SRI). (URL:<http://www.sexualrightsinitiative.com/wp-content/uploads/SRI-Analysis-of-the-Language-of-Child-Early-and-Forced-Marriages-Sep2013.pdf>, (접속일: 2017. 12. 16.)
- Swiebel, J. (1999). *Unpaid Work and Policy-Making Towards a Broader Perspective of Work and Employment* (DESA Discussion Paper Series No. 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UN(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UN Fourth Conference on Women.
- UN (n.d.a). *Fact Sheet: Girls and Young Women*. <https://social.un.org/youthyear/docs/fact-sheet-girl-youngwomen.pdf> (접속일: 2018. 08. 29.)
- UN (n.d.b).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Fact Sheet No. 23).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3en.pdf> (접속일: 2017. 10. 05.)
- UN (2016). *Women's economic empowerment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E/CN.6/2017/3, December 2016.

UNICEF (2013), *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A statistical overview and exploration of the dynamics of change*. New York: UNICEF.

UNICEF (2014), *Hidden in Plain Sight: A Statistical Analysi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New Yor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s.

UNSD (2016a),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5.pdf> (접속일: 2017.8.10.)

UN Women (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New York: UN Women. <http://www.unwomen.org/> (접속일: 2017.11.10.)

UN Women (2015a), *Position Paper: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York: UN Women

UN Women (2015b),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Transforming Economics, Realizing Rights*. New York: UN Women.

WHO (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참고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통계(<http://info.nec.go.kr>)

ISSUE PAPER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18년 9월 29일 / 발행인 이익현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TEL (044) 861-0483 / FAX (044) 868-9919

